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가의 소하천정비 보조 의무 근거 마련 등〉
■ 김석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232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관리청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출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절차 신설	2
2. 국가의 소하천 정비 비용 보조 의무 및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석기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7. 2.
3. 회부연월일 : 2025. 7.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 소하천 구역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에 관하여 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가뭄·홍수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에 따라 2020년부터 소하천 정비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소하천 정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의 정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Ⅲ. 검토의견

1. 관리청의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제출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절차 신설

개정안은 관리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받은 소하천정비중기계획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리청이 이러한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현 행	개 정 안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 계획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생 략)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① ----- ----- -----수 립하고,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¹⁾으로서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하천을 의미함²⁾.

[국가·지방하천과의 비교]

구 분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적용 법률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정 기준	· 유역면적 200km ² 이상 · 다목적댐의 상·하류 · 유역면적 20~200km ² 중 인구 20만 이상, 저수량 500만톤 이상	·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하천	·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폭 2m이상 연장 500m이상의 하천 * 국가·지방하천 제외
규모 (연장/정비완료)	105개소 (3,780km/3,087km)	3,846개소 (32,577km/16,031km)	22,037개소 (55,433km/25,953km)
관리청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재 원	국비 100%	시·도 100% * '19년까지 국비보조(국비 50%, 시·도 50%)	시·군·구 100% * '19년까지 보조(국비 50%, 시·도 50%)

※ 연장 : 하천이 흐르는 길이로서 정비대상을 의미

정비완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정비대상 중 정비가 완료된 것을 의미

(자료 : 행정안전부)

- 1)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을 말한다.
 - 2.-4. (생략)
- 2) 「소하천정비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본래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소하천정비사업은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수립·시행³⁾에 따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되었는데, 이에 따라 현행법은 관리청으로 하여금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제반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하천정비 관련 관리청이 수립하는 계획]

구 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주체	관리청 (시장·군수·구청장)		
수립 주기	10년 마다	5년 마다	소하천정비를 시행할 때
주요 내용	1.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 수계별(水系別) 소하천망(小河川網)의 구성 3. 재해 예방 및 환경 개선과 수질 보전에 관한 사항 4. 소하천등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1. 정비사업의 연도별 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 소하천등 정비의 효과에 관한 사항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의 요약) 2. 정비사항의 개요를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과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수립	지방환경관서의 장 등과 협의 후 수립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소하천에 홍수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2020~2024년 시·도별 소하천 피해 발생 개소는 총 6,784개소로 파악되고 있는 반면, 전국 시·도 평균 소하천 정비율⁴⁾은

3)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선정된 지방이양사업 97개에 소하천정비사업이 포함되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이 보조사업에서 제외됨.

2019년 45.5%에서 2024년 46.8%로 1.3%p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는데, 소하천정비가 원활하지 못한 배경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사업 추진 여건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2020~2024년 시·도별 소하천 피해개소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6,784	2,472	455	903	1,640	1,314
서울	6	-	-	4	2	-
부산	34	20	14	-	-	-
대구	18	10	1	-	7	-
인천	0	-	-	-	-	-
광주	12	12	-	-	-	-
대전	38	18	-	-	-	20
울산	10	7	-	3	-	-
세종	73	1	-	-	49	23
경기	796	244	-	402	10	140
강원	566	332	10	169	52	3
충북	1,111	513	2	32	414	150
충남	1,340	198	85	194	454	409
전북	490	244	-	-	107	139
전남	937	496	183	-	93	165
경북	1,200	289	153	91	446	221
경남	151	86	7	8	6	44
제주	2	2	-	-	-	-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관리청이 5년 마다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수정·보완 요청 절차를 거쳐 중기계획이 수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소하천정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4) 소하천 정비율 = $\frac{\text{정비완료}}{\text{연장(정비대상)}} \times 100$

다만, 고유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관련 하여 개정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관리를 그 예시적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음⁵⁾.

또한, 현행법은 소하천정비 관련 제반 계획을 관리청인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여 수립 주체를 명확히하고 있고, 관리청이 수립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계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계획인 소하천정비중기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군·구청장에게 중기계획의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임.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분류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청이 수립한 중기계획에 대해 검토 후 수정·보완 요청을 하는 것은 관리청의 권한 및 자율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2. 국가의 소하천 정비 비용 보조 의무 및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소하천등 정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3조제1항 본문, 안 제13조의2 신설),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의 목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13조제1항 단서 신설), ② 관리청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비용 보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시·도지사는 소하천 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 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13조(국가의 보조) ① 국가는--- ----- ----- ----- 다만,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은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하여야 한다.
<u><신설></u>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관리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u><신설></u>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행 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

현행	개정안
<신설>	한 소하천등 정비의 필요성· 긴급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사하고,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④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소하천등 정비 등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⑤ 제4항에 따른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2(시·도의 보조) 시·도지사는 소하천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소하천정비사업은 시·군·구의 자체 예산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이양되기 전인 2019년 전체 시·도를 기준으로 편성된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은 5,141억 600만원이었으나, 국비보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2020년

부터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2024년에는 전체 시·도에 편성된 예산은 7,155억 9,800만원으로, 2019년 대비 약 39.2% 증가하였음.

[전체 시·도 기준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 예산편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 계	514,106	725,536	755,054	819,077	630,974	715,598
서 울	-	-	-	-	-	-
부 산	365	3,391	573	505	930	1,117
대 구	1,045	9,888	8,640	7,248	6,435	6,880
인 천	9,084	10,224	8,461	8,551	8,895	5,880
광 주	-	-	230	230	613	1,179
대 전	2,299	6,641	12,273	8,554	6,462	4,019
울 산	-	380	60	330	5,015	7,728
세 종	6,776	7,460	7,742	7,800	6,179	8,153
경 기	78,478	170,423	168,728	212,408	84,647	91,075
강 원	39,444	50,166	63,085	60,474	57,174	70,836
충 북	47,744	64,527	53,798	78,401	55,670	74,511
충 남	45,740	68,999	74,447	76,666	68,833	76,993
전 북	71,670	84,033	79,632	72,310	58,470	76,914
전 남	61,620	78,192	90,548	83,164	78,811	95,214
경 북	88,760	95,312	102,974	110,433	103,372	113,499
경 남	49,313	62,932	66,067	73,510	71,818	68,398
제 주	11,768	12,968	17,796	18,493	17,652	13,200

※ 2019년까지는 국비보조사업(보조율 50%)에 대응하는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함.

(자료 : 행정안전부)

현행법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시·도지사가 소하천 등 정비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⁶⁾ 2,435억 원을 5년 간(2020~2024년) 관리청에 교부한 바 있으나, 소하천정비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장려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소하천정비사업 관련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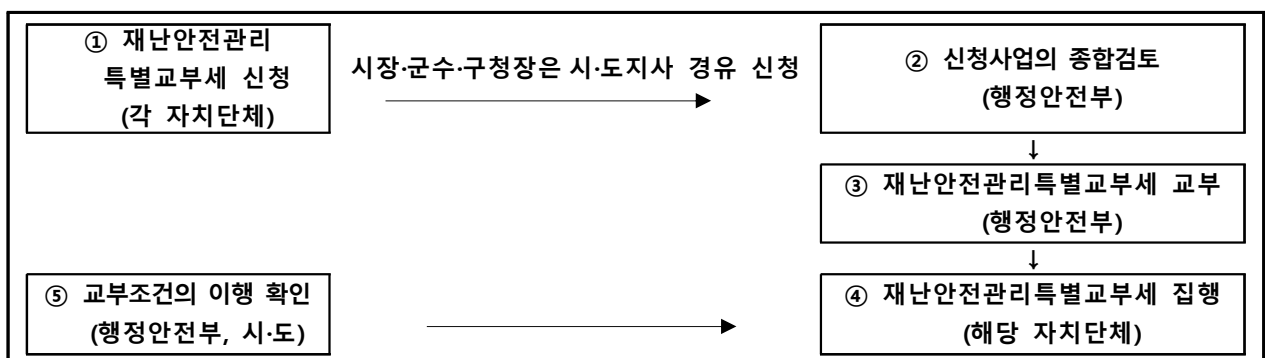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부액	23,750	54,660	78,550	44,500	42,100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비용 보조의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에서 국가와 시·도로 변경하면서, 국가의 경우에는 재해예방 목적에 대해서는 의무적인 비용 보조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하천정비사업 재원 기반을 강화하고,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에 대한 심의·결정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6)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집행 절차



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비용 보조의 주체를 국가로 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의 필요성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행 「지방세법」은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종전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된 경우(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여 종전 국비보조의 규모만큼 해당 사업 예산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음⁷⁾.

7) 「지방세법」 제71조(납입) 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4.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253분의 43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한다. 이 경우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보전하는 시·도 전환사업의 총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항제1호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군 조정교부금(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환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전환사업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소하천정비사업은 우선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선투자 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계획, 집행률 목표 설정·관리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소하천정비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동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⁸⁾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등 관련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시·군·구가 소하천의 관리주체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비보조의 필요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목적인 경우 국가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소하천정비사업의 목적이 재해예방 목적에 해당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⁹⁾, 대부분의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는 안 제13조제1항 단서 규정 적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의 100분의 60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안분하여 납입하고, 나머지 100분의 40은 지역별 소비지출·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164. 소하천 정비

- 9) 「소하천정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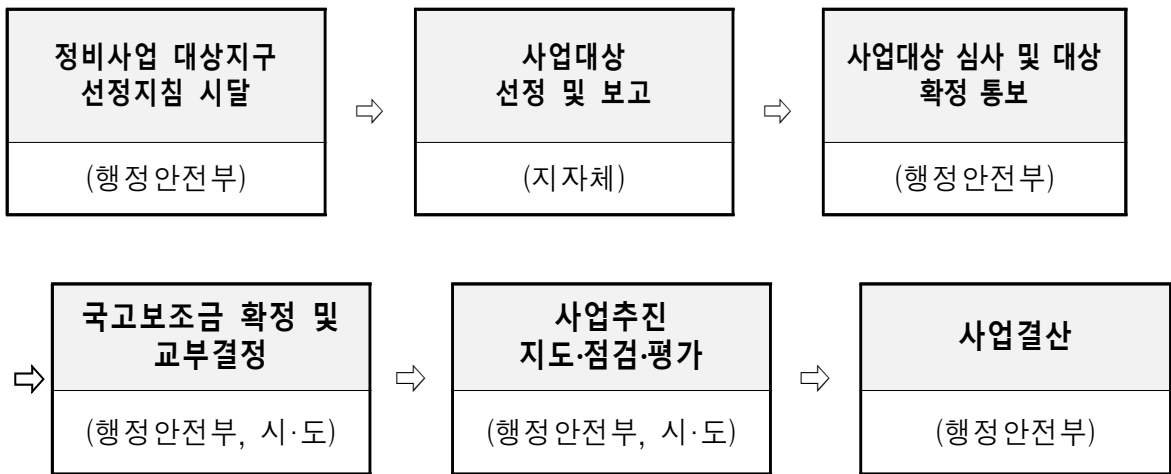
으로 해당 조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에 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또한, 개정안은 관리청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고, 신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비의 필요성·긴급성 등을 심사한 후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청된 사업이 재해예방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에 다른 요소를 심사하여, 소하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 ‘규모’가 아닌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개정안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재해예방 목적의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가의 비용 보조 의무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조문 간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소하천정비사업이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 사업으로 정책 일관성과 현행 소하천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의 교부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행정안전부는 소하천정비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2020년 이전에도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바 없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19년 이전 소하천정비사업(국고보조사업) 집행 절차]



(자료 : 행정안전부)

문 의 처

02)6788-5349